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1가단114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담당변호사 구성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6. 8.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413,728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6. 8.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4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6. D이 원고로부터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D은 원고에게 51,413,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 E가 2016. 8. 27. 사망하였다. E의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의 각각 1/2 지분이 있었고(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C 소유), E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D이 있었는데, D과 피고 C는 사건 부동산의 E 지분(1/2)을 피고 C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2. 2. 손자인 피고 B(D의 자녀)에게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상속 당시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2017. 2. 17.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상속 당시 F의 근저당채권 원금은 3억 원이었고, 현재도 같은 금액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년 4월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E를 상대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가, 2016. 11. 23.경 E의 사망사실을 알고 압류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 개시 무렵 D의 사해행위를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9861, 2012나13379)에서 일부 승소(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아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16. 10. 31. 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무렵 E의 사망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원고가 E의 사망 무렵 또는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피고 C와 D이, 피고 C가 사건 부동산의 E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나. E는 F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D이 상속한 차용금 채무는 1억 2,000만 원(3억 원 × 상속분 2/5)인 사실,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가액은 595,387,200원이고, D 상속분의 가액은 119,077,440원(595,387,200원 × E 지분 1/2 × 상속분 2/5)인 사실, E의 F에

대한 채무는 피고 B이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은 E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사건 부동산의 E 지분이 피고 C를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을 고려하면, E의 차용금 채무 또한 피고 C를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결국 D은 가액 119,077,440원인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포기하고 1억 2,000만 원의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D과 피고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별지)

부동산목록

1. 경기도 가평군 H 대 160㎡

2. 경기도 가평군 H 지상

[도로명 주소] 경기도 가평군 I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및 창고

지1 63.62㎡ 지1 47.98㎡ 1층 59.82㎡ 1층 42.28㎡ 1층 9.5㎡

2층 111.6㎡ 3층 111.6㎡ -끝-